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94 발의연월일: 2020. 12. 16.

발 의 자:김민철・김병주・홍성국

이원택 · 최혜영 · 김남국

임호선 • 이수진 • 이용우

장철민 · 주철현 · 신현영

한준호 · 임오경 · 정청래

장경태 · 오영환 · 민형배

이성만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. 그러나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.

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 력할 필요가 있음.

이를 위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 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 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(안 제18조, 제19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 제목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"지불"을 각각 "지급"으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"지불"을 "지급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(손해배상금 등의 <u>지불</u> 청	제18조(손해배상금 등의 <u>지급</u> 청
구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	구 등) ①
(해당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	
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	
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	
장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	
같다)은 제17조제2항제4호 본	
문에 따른 소송에 대하여 손해	
배상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	
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	
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	
내를 기한으로 하여 당사자에	
게 그 판결에 따라 결정된 손	
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환금	
의 <u>지불</u> 을 청구하여야 한다. 다	<u>지급</u>
만, 손해배상금이나 부당이득반	
환금을 <u>지불</u> 하여야 할 당사자	<u>지급</u>
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면 지	
방의회 의장이 <u>지불</u> 을 청구하	<u>지급</u>
여야 한다.	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	②
라 <u>지불</u> 청구를 받은 자가 같은	<u>지급</u>
항의 기한 내에 손해배상금이	

나 부당이득반환금을 <u>지불</u> 하지
아니하면 손해배상 · 부당이득
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
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. 이 경
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지
치단체의 장이면 그 지방의회
의장이 그 지방자치단체를 다
표한다.

제19조(변상명령 등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 따라 변상할 것을 명령받은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변상금을 <u>지불</u>하지 아니 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(생 략)

<u>지급</u>
,
제19조(변상명령 등) ① (현행과
같음)
②
<u>지급</u>
③ (현행과 같음)